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2.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2. 27

다. 상정일자 : 2003. 2. 27

(제1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조규문

#### 나. 개정사유

- '98년부터 5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으로 우리군 공무원 165명에 대하여 정원을 갑축하여 구조조정을 완료 하였으나
-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직렬 직급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함
-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직렬 직급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2003. 8. 31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
  - 초과현원 : 17명
    - 7급 : 1명,                  · 8급 : 10명,                  · 9급 : 1명
    - 기능9급 : 1명                  · 기능10급 : 4명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61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의 초과정원에 관한 인정시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8월 31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근거로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2003년 2월 28 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합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협의가 있었다는 통보가 있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초과정원 인정시한을 연장하는 조치이지 초과정원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된다고 하더라도 8월 31일까지는 종류별, 직급 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중 집행부의 이제까지의 정원해소 노력 및 추후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기타 개정상 설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4. 결의 답변 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61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조례 제1619호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p> <p>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u>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u></p>	<p>조례 제1619호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증개정조례 부칙</p> <p>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u>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u></p>